

Q

국내 여건상 국내에 주둔한 미8군에서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제반업무가 궁금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미8군 발주 공사의 경우 모든 공사계약이 미국법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바 공사도급금액 외의 국내공사에서는 별도로 계상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공사에서 별도로 안전관리비를 법적계상기준에 맞추어 추가로 책정하여 국내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관련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준하지 않더라도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
2. 미군 발주 공사도 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근로자가 산재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근로자가 산재적용을 받는다면 국내 재해율 산정시 그 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A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바, 주한미군 부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동 협정 제17조에는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 등이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주한미군 발주 건설공사는 국내공사와 동일하게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 및사용기준”에 맞게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속 근로자는 산재보험적용을 받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재해율 산정시 재해건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Q

당 현장은 철골조공사로써 외부 안전난간대를 와이어로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둥과 기둥사이 로프걸이용 고리를 용접하고, 상부 1m정도에 1줄, 최하부에 1줄, 총 2줄로 설치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고, 낙하물 방지 폭목역할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 하는데 안전난간대 설치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이때, 기둥과 기둥사이 간격은 약 7.8m입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제6호에 의하면 안전난간대는 지름 27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이라고 규정된 바, 위와 같이 귀하가 질의한 와이어로프를 안전난간대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제출요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제출부수      2. 수수료      3. 접수절차      4. 작성시 유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1, 2항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각 사업장에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정을 제출토록 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따로 행정관청 등에 규정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동법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 유의사항은

- 가.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나.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안전, 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라.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 사항 중에서 정기교육시 생산직 종사근로자와 사무직 종사근로자를 구분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생산직과 사무직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으나 차량 운전을 하며 순찰 및 공사·감독하는 업체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차량순찰 및 감독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또한, 영업파트 직원들은 사무직/생산직 어느 파트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교육대상자를 생산직종, 사무직종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사업장의 관리체계(또는 조직체계)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생산직이라 하여 단순히 제조업에서의 생산직 개념은 아니고, 당해 사업장의 사업형태에 따라 생산직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사무직이란 인사, 경리, 노무 등의 관리업무를 말함) 귀문의 경우 차량운전을 하며 순찰을 하거나, 공사감독을 한다면 생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 질의와 마찬가지로 영업파트 직원들이 인사, 경리, 노무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생산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